

제33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
제2차 의회운영위원회
2022. 12. 12(월), 13:30

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의안번호	139
제안일자	2022. 11. 17.
회부일자	2022. 11. 23.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(수석전문위원 정창명)

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이철구 의원 외 10명

2. 제안이유

- 「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개정에 맞추어 경상북도의회 공무원의 특별휴가 확대·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등한 복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장기재직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와 분할사용 가능횟수를 변경함
(안 제14조제4항)
-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선거 관련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함(안 제14조제7항)

4. 관련부서 협의

-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(법무혁신담당관)
-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(감사관)

5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
- 예고기간 : 2022.11.30. ~ 12.7.(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-119호)
- 의견제출 : 없음

6. 검토의견

☐ 제안이유

- 「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개정에 맞추어 경상북도의회 공무원의 특별휴가 확대·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등한 복무여건을 마련하여 일·가정 양립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안됨

☐ 종합 검토의견

- 30년 이상 근무시 부여되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, 20년 미만 장기재직 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, 20년 이상은 4회에서 5회로, 30년 이상의 경우 2회에서 5회로 분할사용 할 수 있게 변경하고
-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선거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

- 이는 타 광역자치단체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와 형평성을 맞추고 장기재직자의 휴가 사용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, 투·개표사무원 등 선거관리 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선거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선거 사무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
-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분할사용 횟수 확대,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등이 주요 골자로, 이는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선거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-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,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

광역자치단체별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현황

연번	시도별	총 부여일수	세부내용				비고 (*현재 총 부여일수 개정 시점)
			재직기간	부여일수	분할횟수(한도)	소멸여부	
1	경북	40	10년이상	10	2	여	*2017.7.13.개정
			20년이상	20	4		
			30년이상	10	2		
2	서울	50	10년이상	10	2	여	*2014.1.9.개정(신설)
			20년이상	20	4		
			30년이상	20	4		
3	경기	50	10년이상	10	2	여	*2017.8.7.개정
			20년이상	20	4		
			30년이상	20	4		
4	부산	50	10년이상	10	재직기간 별 최소 3일 이상	여	*2015.1.1.개정 3일미만 잔여일수 원칙적 사용 불가 (예외적 허용)
			20년이상	20			
			30년이상	20			
5	대구	50	10년이상	10	재직기간 별 최소 3일 이상	부	*2020.5.11.개정 3일미만 잔여일수 원칙적 사용 불가 (예외적 허용)
			20년이상	20			
			30년이상	20			
6	인천	50	10년이상	10	2	여	*2015.12.28.개정
			20년이상	20	4		
			30년이상	20	4		
7	광주	50	10년이상	10	4	여	*2016.11.1.개정
			20년이상	20	4		
			30년이상	20	4		
8	대전	50	10년이상	10	3	여	*2021.4.9.개정
			20년이상	20	3		
			30년이상	20	3		
9	울산	60	10년이상	60	12회	부	*2022.6.23.개정 (50일 개정 2018.05.17.)
10	세종	45	10년이상	10	4회	여	*2022.4.20.개정
			20년이상	15	4회		
			30년이상	20	4회		
11	경남	50	10년이상	10	5일 단위(2회)	여	*2018.5.3.개정
			20년이상	20	5일 단위(4회)		
			30년이상	20	5일 단위(4회)		
12	강원	50	10년이상	10	2	여	*2020.4.3.개정
			20년이상	20	3		
			30년이상	20	3		
13	충북	50	10년이상	10	2	여	*2021.11.5.개정
			20년이상	20	4		
			30년이상	20	4		
14	충남	60	10년이상	10	8회	여	*2019.2.20.개정
			20년이상	20	8회		
			30년이상	30	8회		
15	전북	50	10년이상	10	분할횟수 없음/자율 사용	부	*2020.5.29.개정 개정 이전 일괄 소급 적용
			20년이상	20			
			30년이상	20			
16	전남	50	10년이상	10	3	잔여일수 5일 이하 이월	*2022.5.19.개정
			20년이상	20	3		
			30년이상	20	3		
17	제주	50	10년이상	10	2(5일단위)	여	*2018.7.13.개정
			20년이상	20	4(5일단위)		
			30년이상	20	4(5일단위)		